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 가. 발의자: 남궁역 의원
- 나. 의안번호: 제3215호
- 다. 발의일자: 2025년 10월 20일
- 라. 회부일자: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가로수 조성 · 관리 과정에서 수목을 반입 · 반출하고 있는데, 환경 여건에 따라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도로변 공사, 도로표지판 등 도로관리청과 조성 · 관리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나. 「도로법」 및 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 · 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반입·반출과 관련하여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청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을 통해 시(市) 관리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해 오고 있음.
- 동 조례 제10조(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로수 관리청¹⁾이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입·반출 수목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환경 여건에 따라 심의 결과와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바,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8조제1항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정비)를 할 경우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할 것과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가로수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18조제2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한

1) 가로수 관리청(제3조제2호 관련)

구 분	관리청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 · 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재난안전실장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 · 관리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도로교통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임.

전자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²⁾을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안 제2조(정의)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 · 관리)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 ·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